

심

사

청

상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주

1.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청

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

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청구인과 상대방은 [REDACTED] 혼인신고를 마쳤으나, [REDACTED]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, [REDACTED] 협의이혼하였다.

나.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[REDACTED] 아래와 같은 내용(이하 '이 사건 합의'라 한다)의 합의서(이하 '이 사건 합의서'라고 한다)가 작성되었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다. 청구인은 [REDACTED] 상대방으로부터 [REDACTED]원을 지급받았다.

2. 판단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나.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청구인은, 이 사건 합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,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[REDACTED]원은 재산분할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